

「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새마을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분야별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3조)

- 1) (당초)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,
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지원,
새마을 알뜰벼룩장터 운영
- 2) (변경)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,
새마을운동 계승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,
청년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사업

나. 용어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3조,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다.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새마을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분야별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존의 '새마을의 날 행사'나 '알뜰벼룩장터'와 같은 단발성·행사성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교통안전, 환경정화,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으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실제 활동 중인 단체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산 지원의 명분이 확보된 만큼 개정된 조례가 단순히 특정 단체의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 혁신과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